

Safety Data Sheet

According to U.S.A. Federal Hazcom 2012 and Canadian HPR – WHMIS 2015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1. 제품 구분

Code : HI93735B-0

제품명 : Hardness Buffer Reagent B

화학명 : AMINOMETHYL PROPANOL

INDEX No. : 603-070-00-6

EC No. : 204-709-8

CAS No. : 124-68-5

등록번호 : 01-2119475788-16-XXXX

1.2. 적용: 물 샘플 내 총경도 측정

1.3. Safety Data Sheet 정보 제공

회사명: Hanna Instruments S.R.L.

주소: str. Hanna Nr 1

457260 Ioc. Nusfalau (Salaj) Romania

연락처: Tel. (+40) 260607700 Fax. (+40) 260607700

E-mail: msds@hanna.ro

제조사: Hanna Instruments, Inc. - 584 Park East Dr, Woonsocket, Rhode Island, USA 02895

1.4. 긴급 연락처

USA 긴급 연락처: +1-800-424-9300(Chemtrec 24 hour/365 days.)

국제 긴급 연락처: +1-703-527-3887(Chemtrec 24 hour/365 days.)

1.5. 국내 공급자

회사명: 한나기계 (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59(익선동, 현대트레비앙1층134호)

연락처: Tel. (+82) 2-743-5147 Fax. (+82) 2-743-1896

E-mail: mccoyhan@naver.com

2. 위험.유해성

2.1. 내용물/혼합물 유형

이 제품은 OSHA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HCS)(29 CFR 1910.1200)에 의거한 유해 물질로, MSDS를 필요로 한다.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section 11과 12를 확인한다.

구분과 위험 정보

가연성 용액, 분류4

가연성 용액

안구 자극, 분류2

심각한 안구 자극을 유발한다.

피부 자극, 분류2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관련문구 : 주의(Warning)

그림문자 :





Hanna Instruments S.R.L.

HI93735B-0 – Hardness Buffer Reagent B

개정번호 3
2022.11.1
출력날짜 2022.11.1
2 페이지
개정2(2022.2.28) 대체

2. 위험.유해성...>>

2.1. 내용물/혼합물 유형 ...>>

위험 정보:

- H227** 가연성 용액
- H319** 심각한 안구 자극을 유발한다.
- H315**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주의사항:

- 예방:

P280 보호 장갑/보안경/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 대응:

- P302+P352** 피부 접촉시 : 비누와 다량의 물로 씻는다.
- P305+P351+P338** 안구에 들어갈 시 : 몇 분 동안 지속해서 행군다. 렌즈가 있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거한다. 계속해서 행군다.
- P337+P313** 안구 자극이 지속될 시 : 의사 진료를 받는다.
- P362** 오염된 옷을 벗는다.
- P370+P378** 화재의 경우 : 화재 진압을 위해 가루를 사용한다.

- 보관 - 해당 사항 없음

- 폐기 - 해당 사항 없음

2.2. 기타 유해성

환경에 대한 유해성

: 이 제품은 EC Regulation 1272/2008(CLP)에 의거하여 환경에 대한 유해물질로 구분된다.

구분과 유해 정보

수중환경에 대한 유해성, 만성 독성, 분류 3 수중환경에 오랜기간 동안 유해함

위험 정보:

H412 수중환경에 오랜기간 동안 유해함

주의 사항:

- 예방: --
- 반응: --
- 보관: --
- 폐기: --

추가적인 위험성

정보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2. 혼합물

포함:

구분

x = 농도(%) 구분:

2-AMINO-2-METHYLPROPANOL

INDEX	603-070-00-6	100	인화성 액체, 분류4 H227. 안구 자극 분류2 H319. 피부 자극
EC	204-709-8		분류2 H315. 수생 환경에 대한 유해성, 만성 독성, 분류3
CAS	124-68-5		H412
REACH Reg.	01-2119475788-16-XXXX		

* 회분 별 차이가 있다.
유해(H) 문구는 section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응급조치요령

4.1 응급조치요령

눈: 렌즈 착용시 렌즈를 제거한다. 눈꺼풀을 완전히 벌리고 최소 15분 이상 충분한 물로 행귀낸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의사 진료를 받는다.

피부: 오염된 옷을 벗는다. 즉시 충분한 물로 행군다. 자극이 계속된다면 의사 진료를 받는다.

오염된 옷은 사용하기 전에 세척한다.

흡입: 야외로 옮긴다. 호흡곤란 시 즉시 의사 진료를 받는다.

섭취: 즉시 의사 진료를 받는다. 의사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사 진료로 허락된 행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섭취하지 않는다.

4.2 주요 증상

제품으로 인한 특별한 증상 및 증후에 대한 정보 없음

4.3 즉각적인 치료 및 특수 치료 : 관련 정보 없음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5.1 소화제

적정 소화제 :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거품 소화약제

부적합 소화제 : 물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은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지 않다.

하지만 불에 노출된 용기를 식혀, 폭발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5.2 구성 성분 또는 혼합물에 따른 특정 유해성

화재 노출에 따른 위험

화재에 노출된 용기 안에 과도한 압력이 생기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화재 시 발생된 연소물을 들이마시지 말 것.

5.3 소방대원을 위한 정보

일반적인 정보

화재 시 물 분사로 보관용기를 식혀, 잠재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물질 생성과 분해를 방지한다.

항상 모든 소방 장비를 착용한다. 소화에 사용된 물은 하수도로 들어가지 않게 모은다.

화재 진압에 사용한 오염된 물은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소방대원을 위한 특수 보호 장비 : 기본적인 방열복(화재 키트, 장갑, 부츠)과 산소 호흡기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6.1. 인체 보호 장비 및 응급 상황 시 대처방법

위험이 없다면 새어나간 것을 막는다. 적합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 안구 및 개인 의복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사용 과정 및 응급 시에 적용된다.

6.2. 환경 보호 예방조치

제품은 하수도나 지표수, 지하수로 통하는 곳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6.3. 오염원 처리 방법

적합한 용기에 새어나간 제품을 모은다. 만약 가연성 제품이라면 폭발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사용할 용기의 적합성을 Section 10 참고하여 확인한다. 잔여물은 비활성 흡수물질을 사용하여 흡수한다.

제품이 누출된 장소는 환기한다. 폐기물은 반드시 지역규제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Hanna Instruments S.R.L.

HI93735B-0 – Hardness Buffer Reagent B

개정번호 3
2022.11.1
출력날짜 2022.11.1
4 페이지
개정2(2022.2.28) 대체

7. 취급 및 저장방법

7.1.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열, 스파크, 불꽃에서 멀리한다. 금연하며,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적합한 환기 설비가 없다면, 증기는 바닥에 깔릴 수 있다. 점화 시, 먼 거리까지 화재가 발생하고, 역화의 위험이 있다.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피한다. 환경에 유출되는 것을 피한다. 제품 사용 중에는 음식물, 음료를 섭취하지 않고, 금연한다. 오염된 의류 및 개인 보호 장비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곳에 들어가기 전 제거한다.

7.2. 안전한 보관을 위한 주의사항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한다.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며 열, 스파크, 불꽃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과 멀리 떨어뜨려 보관한다. 주의 화학물질과 거리를 두어 보관한다.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8.1. 제어 항목

정보 없음

8.2. 유출 관리

개인 보호 장비

손 – 작업용 장갑을 착용한다. (분류3, OSHA 29 CFR 1910.138 참고)

보호 장갑은 사용 과정과 제품에 따라서 선택하며 다음을 고려한다. : 호환성, 감산성, 파괴시간, 투과성
사용 전 보호 장갑의 화학적 저항을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착용 시간은 과정과 사용 용도에 따른다.

피부 – 전문가용 긴소매 작업복과 보호 신발을 착용한다. 작업복을 벗은 뒤, 비누와 물로 몸을 씻는다.

눈 – 보호경을 착용한다.(OSHA 29 CFR 1910.133)

호흡기 – 구성성분 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이 한계치(e.g. TLV-TWA)를 넘는 경우 농도 한계에 따른 NIOSH 필터가 있는 마스크(NIOSH 42 CFR 84, OSHA 29 CFR 1910.134 참고)를 착용한다. 만약 다양한 종류의 가스, 기체 또는 입자를 포함한 기체가 있을 시 복합 필터가 요구된다. 호흡기 보호 기기들은 규제상 고려되는 노동자 노출 한계치에 맞지 않을 시 반드시 사용한다. 마스크에 의한 보호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된다. 만약 구성물이 향이 없거나 후각 최저선이 합당하는 TLV-TWA보다 높을 시 응급 상황에서 오픈 회로의 압축 공기 호흡기(EN 137 표준에 부합)를 사용하거나 외부 공기 흡입구가 있는 호흡기(EN 138 표준에 부합)를 사용한다. 정확한 호흡 보호기의 선택을 위해 NIOSH 42 CFR 84, OSHA 29 CFR 1910.134 기준을 참고한다.

유출 관리

환기 장비를 포함한 제조 과정상 발생하는 배출 물질들은 지역 환경 규제에 따라 관리한다.

9. 물리, 화학적 특성

9.1. 기본적인 물리, 화학적 특성

항목	값	정보
외관	용액	
색상	무색	
냄새	아민(amine)	
냄새 한계값	자료 없음	
pH	11.3	측정 방법 : ASTM D1293-18 온도: 25°C
녹는점/어는점	자료 없음	
최초 끓는점	자료 없음	
끓는 범위	자료 없음	
발화점	적용되지 않음	
증발률	자료 없음	
가연성	자료 없음	

9. 물리, 화학적 특성

9.1. 기본적인 물리, 화학적 특성...>>

가연상한계	자료 없음
가연하한계	자료 없음
폭발하한계	자료 없음
폭발상한계	자료 없음
기체 압력	자료 없음
기체 밀도	자료 없음
연관 밀도	0.92
용해도	수용성
분배 계수(n-옥탄올/물)	자료 없음
자연발화 온도	자료 없음
분해 온도	자료 없음
점성	자료 없음
폭발 특성	자료 없음
산화 특성	자료 없음

9.2. 기타 정보

분자량(Molecular weight) : 89.140

10. 안정성 및 반응성

10.1. 반응성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다른 구성물과 반응하는 특별한 위험성 없음

10.2. 화학 안정성

이 제품은 일반적인 사용과 보관에 있어 안정적이다.

10.3. 위험한 반응 가능성

이 제품은 일반적인 사용과 보관에 있어 유해한 반응이 예상되지 않는다.

위험한 반응 가능성 : 강한 산화제, 강산

10.4. 피해야 할 조건

특이 사항은 없으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10.5. 피해야 할 물질 :

피해야 하는 물질 : 구리, 구리합금

10.6.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열로 인한 분해 또는 화재, 가스, 증기는 잠재적으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 Nitric oxide

11. 독성에 관한 정보

제품 자체로서의 실험 자료 부재로, 건강에 대한 유해성은 적용 가능한 규제의 분류에 따라 제품이 함유하는 성분의 구성에 따라 평가한다. section 3에 나타난 제품의 각 유해물질 농도를 참고하여 제품 노출에 대한 독성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1 독성 반응에 대한 정보

신진대사, 독성동태학, 활동 메커니즘, 이외 다른 정보

정보 없음

노출 경로에 따른 정보

정보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11.1 독성 반응에 대한 정보...>>

단기, 장기 노출에 따른 만성적, 지연성, 즉각적 영향

정보 없음

상호 효과

정보 없음

급성 독성

위험 등급에 적용되지 않음

피부 부식/자극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심각한 눈 손상/자극

심각한 안구 자극을 유발한다.

기관지 또는 피부 민감성

위험 등급에 적용되지 않음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성

위험 등급에 적용되지 않음

발암성

위험 등급에 적용되지 않음

생산에 관련한 독성

위험 등급에 적용되지 않음

부분 - 1회 노출

위험 등급에 적용되지 않음

부분 - 반복된 노출

위험 등급에 적용되지 않음

흡입 유해성

위험 등급에 적용되지 않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은 바른 작업 관례에 따라서 사용한다. 배출은 삼간다.

12.1. 독성 : 정보 없음

12.2. 지속과 분해 :

2-AMINO-2-METHYLPROPANOL

수용성 1000 - 10000 mg/L

빠른 분해될 수 있다.

12.3. 생물축적 가능성:

2-AMINO-2-METHYLPROPANOL

분배 계수:n-옥탄올/물 -0.63

BCF 320

12.4. 토양 이동성 : 정보 없음

12.5. PBT & vPvB :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 제품은 어떠한 PBT 또는 vPvB를 0.1% 이상 포함하지 않는다.

12.6. 기타 유해 영향 : 정보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13.1. 폐기 방법

가능하다면 재사용한다. 깨끗한 제품 잔여물을 특수 비유해 폐기물로 간주한다. 폐기물은 국가, 지역 규제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배출한다. 폐기물 운송은 위험물 운송 규제법에 따를 수 있다. 오염된 포장은 국가 규제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Hanna Instruments S.R.L.

HI93735B-0 – Hardness Buffer Reagent B

개정번호 3
2022.11.1
출력날짜 2022.11.1
7 페이지
개정2(2022.2.28) 대체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이 제품은 code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ADR), by rail(RID),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IMDG), of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ATA) 규제에 의거한 비 위험물질이다.

14.1 UN number : 적용되지 않음

14.2. UN 적정 운송 이름: 적용되지 않음

14.3. 운송 유해성 분류: 적용되지 않음

14.4. 포장 그룹: 적용되지 않음

14.5. 환경 유해성: 적용되지 않음

14.6. 사용자를 위한 특별 주의 : 적용되지 않음

14.7. Marpol의 Annex II와 IBC 코드에 따른 산적 화물 운송 : 관련 정보 없음

15. 법적인 규제 정보

국내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

해당 없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제

해당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제

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1000ℓ)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

해당 없음, 폐기물관리법 13조의 처리 기준에 따라서 폐기한다.

미국 연방 규제법 (U.S Federal Regulations)

TSCA :

모든 구성 성분들은 TSCA에 등록되어 있다.

Clean Air Act Section 112(b)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Clean Air Act Section 602 Class I Substances :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Clean Air Act Section 602 Class II Substances :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Clean Water Act - 우선 순위 오염 물질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Clean Water Act - 독성 오염 물질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DEA List I Chemicals (Precursor Chemicals)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DEA List II Chemicals (Essential Chemicals)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EPA List of Lists :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Hanna Instruments S.R.L.

HI93735B-0 – Hardness Buffer Reagent B

개정번호 3
2022.11.1
출력날짜 2022.11.1
8 페이지
개정2(2022.2.28) 대체

15. 법적인 규제 정보...>>

313 Category Code :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EPCRA 302 EHS TPQ: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EPCRA 302 EHS TPQ: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CERCLA RQ: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EPCRA 313 TRI: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RCRA Code :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CAA 112(r) RMP TQ:

관련 구성 성분 기재 없음

국제 규제법 (International Regulations)

(EC)Reg.649/2012에 의거한 수출 관련 보고물질

없음

노트르담 협약 물질

없음

스톡홀름 협약 물질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Section 2-3에 기재된 유해성 구분 문구

- H227** 가연성 용액
- H315**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 H319** 심각한 안구 자극을 유발한다.
- H412** 장기간 영향으로 수생 생태에 유해하다.

사용자 참고사항

이 문서는 당사의 전문 지식과 최신 정보에 기반을 두어 작성되었다. 사용자는 제공되는 제품의 정보를 통하여 제품 사용 적합성을 판단한다. 이 문서는 제품의 질적 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품 사용은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제품은 현행법에 따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조사는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류를 위한 계산 방법

제품 구분은 Section 11, 12에 다른 사항 OSHA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HCS)(29 CFR 1910.1200) 기준에 따른다. 화학적-물리적 평가에 대한 정보는 Section 9에 기재되어 있다.

16. 기타 참고사항...>>**용어설명**

- 313 CATEGORY COD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 Know Act Section 313 Category Code
- ADR: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 ATE: Acute Toxicity Estimate
- CAA 112 ® RMP TQ: Risk Management Plan Threshold Quantity (Clean Air Act Section 112®)
- CAS: Chemical Abstract Service Number
- CE50: Effective concentration (required to induce a 50% effect)
- CERCLA RQ: Reportable Quantity (Comprehensive Environment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CLP: Regulation (EC) 1272/2008
-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 EmS: Emergency Schedule
-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 Know Act
- EPCRA 302 EHS TPQ: Extremely Hazardous Substance Threshold Planning Quantity (Section 302 Category Code)
- EPCRA 304 EHS RQ: Extremely Hazardous Substance Reportable Quantity (Section 304 Category Code)
- EPCRA 313 TRI: Toxics Release Inventory (Section 313 Category Code)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IATA DG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Dangerous Goods Regulation
- IC50: Immobilization Concentration 50%
- IMDG: International Maritime Code for dangerous goods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LC50: Lethal Concentration 50%
- LD50: Lethal dose 50%
- OEL: Occupational Exposure Level
- PEL: Predicted exposure level
- RCRA Cod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Code
- REACH: Regulation (EC) 1907/2006
- REL: Recommended exposure limit
- RID: Regul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train
- TLV: Threshold Limit Value
- TLV CEILING: Concentration that should not be exceeded during any time of occupational exposure.
-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WA: Time-weighted average exposure limit
- TWA STEL: Short-term exposure limit
-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 WHMIS: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개정정보

다음 부분이 수정됨

: Section 03/09/10/11/12/15/16